

<p>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利子率, 延滞利子を 포함한 것입니다. 適用基準을 金融通貨委員會에서 決定 告示한 利子率에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 教育金庫 利子率로 變更하고, 公有財産審議會의 委員 中 社會教育課長을 企劃豫算擔當官으로 變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1993年 10月 28日 韓國銀行의 金融通貨委員會에서 金融機關의 與・受信金利를 自由與・受信金利로 전환함에 따라 利子率, 延滞利子 포함한 것입니다. 利子率의 적용 기준을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 教育金庫로 指定된 金融機關의 家計貸出金利로 變更하고, 公有財産審議會 構成委員 中 社會教育課長을 審議 權限 및 擔當 業務와 관련이 많은 企劃豫算擔當官으로 交替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漢江女子中學校를 閉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永登浦區 楊坪洞 4街 315番地에 所在한 漢江女子中學校는 高校教育體制改編計劃에 따라 實業系高校 收容施設 擴充을 위하여 同校를 閉校하고 電子工藝高等學校로 昇格 轉換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보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에 의하여 같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尊敬하는 議員 여러분, 當 委員會에서 執行部側의 자세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關聯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살피고, 또한 深度 있는 質疑 答辯을 통하여 신중한 審査를 한 結果, 전반적으로 必要性和 合理性이 있다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報告드린 대로 可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</p>	<p>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李永輔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님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5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7조(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) ①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8조(중건의 제7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</p>
--	--

<p>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[별표]의 일반직 4(5)급란 및 5급란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, 일반직 6급란중 “지방행정주사”를 “지방교육행정주사”로, 일반직 7급란중 “지방행정주사보”를 “지방교육행정주사보”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중은행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[별표 2]의 중학교(남부)중 “한강여자중학교”란을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2항중 “사회교육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21조제2항중 “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에”로 한다.</p> <p>제26조중 “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</p>	<p>17.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6時 10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都市整備委員會 崔相燮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崔相燮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都市整備委員會所屬 崔相燮議員입니다.</p> <p>本議員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이번에 上程된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3年 8月 9日字 建築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現行條例를 上位法인 建築法施行令과 一致시키도록 하고 또 그간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는 問題點이 있어 이를 補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, 現行條例 中 서울市 建築審議委員會의 審議 對象이 11層 이상으로서 1萬㎡ 이상의 경우만 審議하게 되던 것을 적절한 都市美觀을 維持하기 위하여 11層 미만의 建</p>